

“과인 생략”

## 서울특별시

인사 200 - 1620

521

1934. 6. 2.

## 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술 규정 시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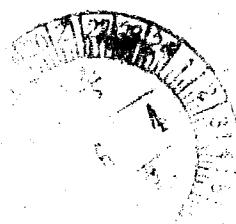
운영 제611호 서울특별시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을 범침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할것.

제5부 서술특례시 6급 이하 시보금무상 실무수습 규정 1부. 꼴.

세	민족2계장 민족1계장 무생리계장 시민회장	결재

१० अप्रैल १९७५ विनायक चतुर्दशी

수진서 서각 1-60, 서구 1-17, 서사 1-59, 서보 1-17.



서울특별시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 수습 규정

서울특별시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직방공무원 입용령 제2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무원이 필자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본 방침) 시보공무원의 실무수습은 다음 과로와 같이 실시하며,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.

1. 일선 행정의 전행업무부어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을 실시한다.

2. 지도관이 체계의 확립과 개화성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도록 한다.

제 3조 (시보공무원의 소속)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본청, 구청은 충무과, 사업소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.

제 4조 (수습기관 및 기간) (1) 시보공무원의 수습기관 및 기간은 다음 과로 같다.

1. 본청, 사업소 : 배치된 기관의 실과 (6개월)

2. 구 청

◦ 6·7급 : 1차 동사무소 (2개월)

◦ 2차 구청 실과 (4개월)

◦ 8·9급 : 1차 동사무소 (3개월)

◦ 2차 구청 실과 (3개월)

◦ 기술직 : 구청 (6개월)

(2) 수습기간중에 실시된 고육 훈련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한다.

(3) 수습기간중 병역의무의 이행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소멸된후 규정된 잔여기간을 수습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시보공무원의 의무) 시보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, 수습기관의  
장 및 수습지도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수습부서의 순환 배치) 수습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 
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1월씩 업무분담 또는 순환 배치  
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할  
수 있다.

제 7조 (수습 요청) 시보공무원은 배치된 실과, 동단의 보조기관의 주요 업무  
에 대하여 서면과정통을 수습하며,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 
처리한다.

제 8조 (지도 감독)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근무상황카드와 별지 제1호  
서식의 수습일지를 바탕 작성하여 시보공무원의 수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  
감독한다.

제 9조 (수습지도관의 지정) 시보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각  
기관별 수습지도관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본청, 구청 : 행무과장
- (2) 사업소 : 인사부서 주무과장
- (3) 동 : 사무장

제 10조 (수습지도관의 임무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습지도관은 일정별 수습  
계획, 수습방법, 수습과 관련된 과제 부여 등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 
수습이 되도록 시보공무원을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징계 등) 수습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,  
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개인별 실무수습 카드에  
기록하고 당해 시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 
민족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조 (수습 중단의 통보) 사보공무원이 실무수습 중 병역 의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되거나, 수습 중단사유가 소멸되어 수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등장은 구청장, 구청장과 사업소 장은 시장 (인사과장)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본청일 경우에는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수습 카드의 활용) (1) 수습상황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수습지도관이 책임 작성하여야 하며, 수습 종료 5일전까지 입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(2) 임용 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과 수습 종합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수습상황의 평정) (1) 시보공무원에 대한 수습상황의 평정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인별 실무수습 카드에 의하여 매월 말 실시하며,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오와 같다.

1. 본장, 사업소	행정자 - 수습 실과장	확인자 - 수습지도관
2. 구청장	행정자 - 배치된 실과장	확인자 - 수습지도관
3. 동	행정자 - 사무장	확인자 - 동장

中華書局影印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 
(2) (경과 규정) 이 규정은 시행당시 실무수습중에 있는 시보공무원의 수습방법은 이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.

( 제1호 서식 )

수습 일지

작금 8

성병 2

년월일	수습부서	수습사항 및 지시사항	건의사항 및 의견	수습부서장 의견 및 확인

(제2회) 한글

① 성명	한준	② 성별	여	③ 본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	④ 학년학년도	2학기
① 생년월일	2005. 6. 15.	② 주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	③ 학교	서울대학교	④ 학과	국어학과
⑤ 기간	2023. 9. 1 ~ 2024. 8. 31	⑥ 학교명	서울대학교	⑦ 학과명	국어학과	⑧ 사전	국립국어원 사전
⑨ 학력	부터	까지	부터	까지			
수습사항	주분	수습성적	수: 주의양호 상: 보통 우: 양호 가: 불량	⑩ 수습기관명	⑪ 수습기간	⑫ 수습내용	⑬ 수습기관장
① 수습기관명	② 수습기간	③ 수습내용	④ 평정 기준	⑤ 수: 주의양호 상: 보통 우: 양호 가: 불량	⑥ 수: 주의양호 상: 보통 우: 양호 가: 불량	⑦ 수: 주의양호 상: 보통 우: 양호 가: 불량	⑧ 수: 주의양호 상: 보통 우: 양호 가: 불량
⑨ 평정 및 평가자	총점	⑩ 평정자작성명	인	⑪ 평정자작성명	인	⑫ 평정자작성명	인
⑪ 평정자작성명	인	⑬ 평정자작성명	인	⑭ 평정자작성명	인	⑮ 평정자작성명	인
⑫ 평정자작성명	인	⑬ 평정자작성명	인	⑭ 평정자작성명	인	⑮ 평정자작성명	인
⑬ 평정자작성명	인	⑭ 평정자작성명	인	⑮ 평정자작성명	인		
⑭ 평정자작성명	인	⑮ 평정자작성명	인				
⑮ 평정자작성명	인						

평정자작성명 인							
평정자작성명 인							
평정자작성명 인							
평정자작성명 인							
평정자작성명 인							

신분 변동 상황			기타 사항
기간	변동 내용	변동 사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작성서 유의사항</li> <li>• 수습성적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할 것.</li> <li>• 수습기관명은 수습기관(실·각·동단위 보조 기관)별로 기재할 것.</li> <li>• 수습내용은 개조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 할 것.</li> <li>• 수습증명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 은 본 적도를 별도 관리</li> </ul>			
종합 의견			(수습기관명) 장 (인)

서보 공무원 실무 수습 쭈아드

서 울 특 별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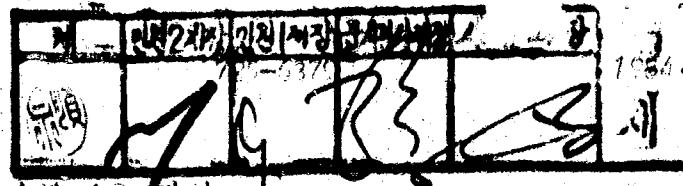
"관인성"부

서 울 특 별 시

법률 810-321

수신: 수신자 휴대

제목: 소송문서 수발에 따른 지시



1984. 6. 12.

1. 법률 810-260 (84. 5. 29)로의 추가 지시입니다.

2. 소송문서는 각급 법원에서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근무시간 이후나  
공휴일에 관계없이 송달되고 있는 바 이 문서는 접수된 날부터 모든 절차의  
한년기일이 기산되어 공휴일도 한년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같은 각급  
기관의 문서수발과 당직근무증의 문서수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 
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이행토록 조치할 것.

3. 이 지시사항은 부서별로 전직원에 공합 주지하여 당직근무에 입  
함시 이행토록 할 것.

부탁

음 =

1. 근무시간증

0. 문서수발과 (본청시민과, 구청 시민봉사실)

가. 소송에 관한 특별송달문서를 접수하는 접수일, 시간, 송달번호  
를 접수부에 기록할 것.

나. 근무개시일 당직실에서 이관되는 소송문서는 당직실의 접수  
대장상 기록된 접수일로 일부인을 짹을 것.

(예 : 토요일 오후 당직시간동안 접수한 경우 - 토요일자로 접수인을 짹어야  
마지 윔요일자로 접수처할 것)

2. 근무시간외

0. 당직근무 감독주관과 (총무과)

가. 법집 양식의 소송문서 접수대장을 즉시 비치기로 접수로록  
할 것.

별부 310-

72-6379

1964. 6. 12.

나. 대신문무령 소송문서 (소원광호학)가 송달되면 당법을 접수하고 있고 위/발가로 서류를 대장에 기록한 것.

다. 군부 유통부 주임자 또는 문서 수발과에 문서와 대장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.

라. 모든 당직군무주 (수취직권집)에게 이 요령을 군부 개시전에 지시할 것.

"암속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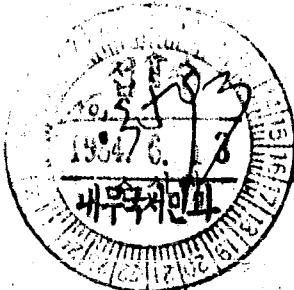
소송문서 접수 대장

접수일	전 수 문 서				인계, 인수사항		
	일	시간	문서명	발송기간	송달번호	인계자	인수자

표.

서 울 특 별 시

장



서과1-67, 서사26,32,33, 시구1-17.

